

**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연구과  
단시간근로자(선박승무원-기관사)  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공고**

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연구과 단시간근로자(선박승무원-기관사)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3일  
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

### 1. 서류전형 합격자(응시번호)

| 채용분야                  | 채용인원 | 응시번호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단시간근로자<br>(선박승무원-기관사) | 1명   | 1    |

### 2. 면접전형 일시 및 장소

- 일시: 2024년 4월 8일(월), 14:00
- 장소: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사회교육관 비파실  
- 소재지(주소): 전남 목포시 남농로 136,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본관
- ※ 면접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### 3. 면접대상자 유의사항

- 응시자는 불임의 서류[불임1, 불임2]를 작성하여 면접당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자는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지참 후 면접 20분 전 까지 도착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면접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되며 면접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면접일정 및 장소 등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에는 문화재청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등에 재공지할 예정입니다.

-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연구과 채용담당자(061-270-209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**3. 최종합격자 발표 : 2024년 4월 11일(목)**

- 문화재청 및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게재, 개별통보 병행

##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

| 성 명 | 생년월일 |
|-----|------|
|     |      |

| 목 록  | 해당여부  |
|--|---|
| ① 피성년후견인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 |
|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 |
|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 |
|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 |
|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 |
|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 |
|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 |
|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br>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<br>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 |
|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<br>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 |
|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 |
|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 |

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4. . .

성명 : (서명)

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귀하

